

7인 미만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·소화기 상태점검 강화

- ❖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의 ‘소화기 설치의무’ 규정을 모든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로 확대
- ❖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모든 승용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소방청 현식승인을 받은 ‘자동차용 소화기’ 장착을 의무화

❖ 차량내 소화기 설치위치 규정 명약화



운전석 바닥 하부



운전석 앞문 부근



운전석 출입문 포켓



조수석 앞 사물함

- ▶ **모든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:** 자동차용 소화기를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설치 하도록 명시
- ▶ 5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간이소화용구 가능, 7인 이상 승용자동차는 일정소화능력 이상 소화기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 위치는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하단부, 운전석 출입문 포켓, 조수석 앞 사물함 등

❖ 『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』 제57조 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)
제57조(소화설비) ① (생략) 1. 승차정원 7인 이상 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: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 (이하 "능력단위"라 한다)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	제57조(소화설비) ① (생략) 1. 모든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: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 (이하 "능력단위"라 한다)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

❖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

현행 :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15	개정(안)
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(제73조 관련) ⇨ 22) 소화기 및 방화장치 - 검사기준 :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- 검사방법 : <u>소화기의 설치여부 확인</u>	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(제73조 관련) ⇨ 22) 소화기 및 방화장치 - 검사기준 :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- 검사방법 : <u>소화기 설치수량, 충압기준, 노후상태(내구연한) 등 설치여부 확인</u>

※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팀(☎6942-1271)으로 문의바랍니다.